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상법 218~218p 2.	오타	2. 주주명부의 폐 쇄	2. 주주명부의 폐 쇄
223~223p 3.	개념,공식-설명	3.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상법 제374조의2)을 준용한다. 따라서 회사는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기간(양도승인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 매수가격은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나, 만약 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1) 주식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7 제2항). (2) 회사의 매수의무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374조의2)을 준용한다. 따라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승인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2항). (3) 매매가격의 결정 매매가격은 매수청구인과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되나(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3항), 만약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5항).
		수정 사유	내용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